

● 신청절차



● 알아두세요!

기초생활수급(권)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, 세대구성, 임대차 계약 내용, 소득·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
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(부정수급),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.
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-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문의

2021년 10월부터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부양의무자 기준이
폐지됩니다



보건복지부



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


○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?

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·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이 ’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.

* 다만, 고소득(연 1억, 세전)·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

○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
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.

○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

1. 생계급여 수급(신청)자 가구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선정기준 이하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’21년	548,349	926,424	1,195,185	1,462,887	1,727,212	1,988,581
’22년	583,444	978,026	1,258,410	1,536,324	1,807,355	2,072,101

2.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고소득(연 1억, 세전) 또는 고재산(9억)이 아닌 경우

○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

최저보장수준(=선정기준)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
생계급여 지원

